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84

발의연월일: 2022. 6. 13.

발 의 자:배준영·김상훈·강대식

양금희 • 구자근 • 조명희

정우택 · 이종배 · 김용판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8"을 "100분의 25"로, "100분의 16"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 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 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② ~ ⑤ (생 략)

1)
<u>100분의 15</u>
<u>100분의 20</u>
<u>100분의 25</u>
2)
<u>100분의 20</u>
<u>100분의 25</u>
<u>100분의 30</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